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교보약사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 |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
|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 |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
|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 | 교보약사자산운용(주) ☎ 02-767-9600 |
| 4. 판 매 회 사 | : | 교보약사자산운용(주) 홈페이지(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참조 |
| 5. 작성기준일 | : | 2014년 1월 5일 |
|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 | 2014년 1월 20일 |
|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
|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 9. 존속기간 | :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판매회사 영업점 |

11.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법제93조에 따른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 |
|--|-----------|
|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4 |
| 1. 투자목적 | 4 |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4 |
| 3. 주요 투자위험 | 5 |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6 |
| 5. 운용전문인력 | 6 |
| 6.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 6 |
| | |
|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 8 |
| 1. 보수 및 수수료 | 8 |
| 2. 과세 | 10 |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11 |
| 4. 전환 절차 및 방법 | 12 |
| | |
| III. 요약 재무정보 | 13 |
| 1. 요약 재무정보 | 13 |
| | |
|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고객보관용) | 14 |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주식파생형)집합투자기구로, KOSPI200 수익률을 추종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주식 포트폴리오 및 주가지수 선물, 옵션, ETF(상장지수펀드) 등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인 KOSPI 200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으로 인덱스복제 주식포트폴리오를 구성 및 투자하며, 추적오차^{주1)}가 최소화되도록 운용합니다.

① KOSPI 200 복제 포트폴리오 시스템 운용

- 당사 인덱스 펀드 운용에 사용되는 KOSPI 200 지수 복제 System 사용
- 정기 리밸런싱 및 상시 리밸런싱을 통하여 추적오차의 최소화
- 추적오차 모니터링 시스템 및 리밸런싱 제약조건을 통하여 효율적 추적오차 관리

②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식들의 배당 수익

③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KOSPI 200 지수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주2)} 등의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률이 낮은 것을 매수하고 수익률이 높은 것을 매도하였다가 향후 수익률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되는 경우 청산하는 차익거래 ^{주3)}

- 현물 vs 선물 차익거래 (KOSPI 200 복제 포트폴리오 vs KOSPI 200 선물)
- 현물 vs 합성선물 차익거래 (KOSPI 200 복제 포트폴리오 vs KOSPI 200 합성선물)
- 선물 vs 옵션 차익거래 (KOSPI 200 선물 vs KOSPI 200 합성선물(옵션))
- 현물 vs 개별주식 선물 차익거래 (개별종목 vs 개별주식 선물)

④ 보유 주식 대차를 통한 대차수수료 수익

⑤ 보유 주식의 매수청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 등

주1) 추적오차(Tracking Error) : [인덱스복제포트폴리오 수익률 - KOSPI 200 지수 수익률]의 표준 편차

주2) 상장지수펀드(ETF) : KOSPI 200 지수와 같은 수익률을 내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거래소시장에서 주식처럼 매매 할 수 있음

주3) 차익거래 :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는 그 상품을 매도해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2) 위험관리 :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 방안

투자자산 중 인덱스복제 주식포트폴리오는 당사의 인덱스 복제 시스템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고, 구성된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사전에 정해진 운용프로세스상 제약 조건에 따라 정기 리밸런싱 및 상시 리밸런싱을 통해 벤치마크 수익률과의 추적오차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됩니다. 단, 인덱스 구성 종목의 변경 또는 구성종목의 비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운용프로세스상 제약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합니다.

(3)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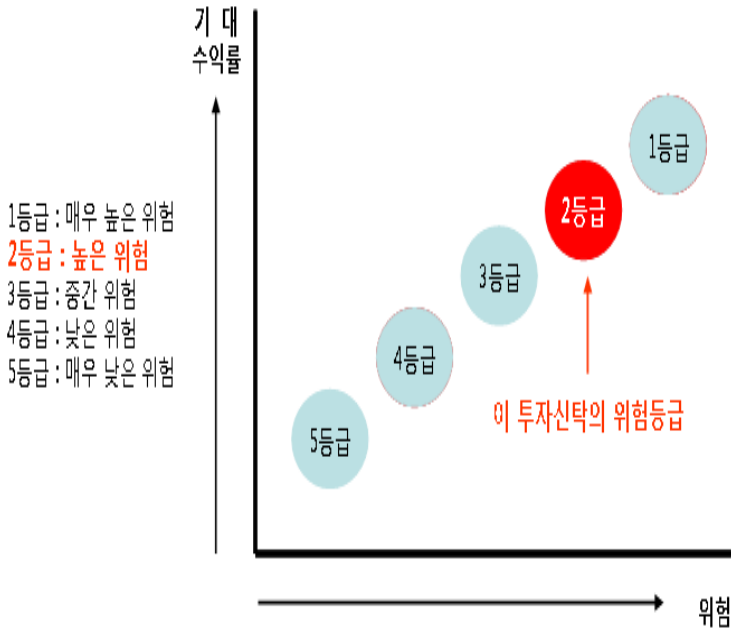
- KOSPI 200 지수 (Korea Stock Price Index 200) : 한국의 주식시장과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200종목으로 구성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 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지수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당사 활용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등으로 인해 KOSPI200 지수 수익률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투자위험 등급 (2) 등급 : 높은 위험 수준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주식파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수준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국가의 주식 등에 집중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투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러한 높은 투자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 이러한 유형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교보약사자산운용(주)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2014.01.05기준)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 운용자산규모 | |
| 박찬 | 1971 | 본부장 | 28개 | 18,676억원 |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부 파생상품팀 - 교보증권 법인사업부 금융공학영업팀 - (현)교보약사자산운용 INDEX/QUANT운용본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개수 : 5개 규모 : 2,311억원 |

주)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 기간 | 최근 1 년차 | 최근 2 년차 | 최근 3 년차 | 최근 4 년차 | 최근 5 년차 |
|---------|---------|-----------------------|-----------------------|-----------------------|-----------------------|
| | | 12.05.09 ~13.05.08 | 11.05.09 ~12.05.08 | 10.05.09 ~11.05.08 | 09.05.09 ~10.05.08 |
| Class A | -0.69% | -7.59% | 34.76% | 20.86% | -22.16% |

| | | | | | |
|----------|-----------------------|-----------------------|-----------------------|-----------------------|-----------------------|
| 비교지수 | -2.66% | -7.95% | 31.89% | 18.81% | -23.73% |
| 기간 | 최근 1 년차 | 최근 2 년차 | 최근 3 년차 | 최근 4 년차 | 최근 5 년차 |
| | 12.05.09 ~13.05.08 | 11.05.09 ~12.05.08 | 10.05.09 ~11.05.08 | 09.05.09 ~10.05.08 | 08.05.09 ~09.05.08 |
| Class B | -0.10% | -7.02% | 35.55% | 21.58% | -21.61% |
| 비교지수 | -2.66% | -7.95% | 31.89% | 18.81% | -23.73% |
| 기간 | 최근 1 년차 | 최근 2 년차 | 최근 3 년차 | 최근 4 년차 | 최근 5 년차 |
| | 12.05.09 ~13.05.08 | 11.05.09 ~12.05.08 | 10.05.09 ~11.05.08 | 09.05.09 ~10.05.08 | 08.05.09 ~09.05.08 |
| Class e | -0.24% | -7.15% | 35.37% | 21.40% | -21.78% |
| 비교지수 | -2.66% | -7.95% | 31.89% | 18.81% | -23.73% |
| 기간 | 최근 1 년차 | 최근 2 년차 | 최근 3 년차 | 최근 4 년차 | 최근 5 년차 |
| | 12.05.09 ~13.05.08 | 11.05.09 ~12.05.08 | 10.05.09 ~11.05.08 | 09.05.09 ~10.05.08 | 08.05.09 ~09.05.08 |
| Class C | -1.08% | -8.08% | 34.05% | 20.26% | -22.54% |
| 비교지수 | -2.66% | -7.95% | 31.89% | 18.81% | -23.73% |
| 기간 | 최근 1 년차 | 최근 2 년차 | 최근 3 년차 | 최근 4 년차 | 최근 5 년차 |
| | 12.05.09 ~13.05.08 | 11.05.09 ~12.05.08 | 10.05.09 ~11.05.08 | 09.05.09 ~10.05.08 | 08.05.09 ~09.05.08 |
| Class CH | -1.08% | -7.97% | 34.29% | 20.46% | -22.50% |
| 비교지수 | -2.72% | -7.95% | 31.89% | 18.81% | -23.73% |
| 기간 | 최근 1 년차 | 최근 2 년차 | 최근 3 년차 | 최근 4 년차 | 최근 5 년차 |
| | 12.05.09 ~13.05.08 | 11.05.09 ~12.05.08 | 10.05.09 ~11.05.08 | 09.05.09 ~10.05.08 | 08.05.09 ~09.05.08 |
| Class A2 | -0.10% | -7.02% | 35.55% | 21.58% | -21.61% |
| 비교지수 | -2.72% | -7.95% | 31.89% | 18.81% | -23.73% |
| 기간 | 최근 1 년차 | 최근 2 년차 | 최근 3 년차 | 최근 4 년차 | 최근 5 년차 |
| | 12.05.09 ~13.05.08 | 11.05.09 ~12.05.08 | - | - | - |
| Class CW | -0.10% | -7.02% | - | - | - |
| 비교지수 | -2.72% | -7.95% | - | - | - |

주1)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Ⅱ.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이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별 | 가입자격 |
|------------|---|
| Class A | 납입 건별 납입금액 5억원 미만 |
| Class B | 납입 건별 납입금액 5억원 이상 |
| Class C | 제한 없음 |
| Class 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
| Class CH | 만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 |
| Class C3 | 납입 건별 납입금액 5억원 이상 |
| Class 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를 보유한 자 |
| Class A2 | -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변액보험을 포함한다) -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를 보유한 자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
| Class C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 |
| Class C-P2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분 | 수수료 비율 | | | | | | | | | | 지급 시기 |
|----------|---------|----------------|----|------|------------------|----|----|------|----|------|-------|
| | A | B | C | E | CH | C3 | CW | A2 | CP | C-P2 | |
| 선취판매 수수료 | 1.00 | 0.03 | 없음 | 0.50 | 없음 | 없음 | 없음 | 0.03 | 없음 | 없음 | 매입시 |
| 환매 수수료 | 없음 | 90일 미만 이익금의70% | | 없음 | 90일 미만 : 이익금의70% | | | | | 없음 | 환매시 |
| 전환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전환시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기준임.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명칭 (클래스)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
| | 집합투 자업자 보수 | 판매회 사보수 | 신탁업 자보수 | 일반사 무관리 회사보 수 | 기타 비용 | 총 보수· 비용 | 합성 총보수 ·비용 | 증권 거래 비용 | |
| A | 0.15 | 0.60 | 0.0045 | 0.005 | 0.0054 | 0.7649 | 0.7649 | 0.0382 | |
| B | 0.15 | 0.00 | 0.0045 | 0.005 | 0.0054 | 0.1649 | 0.1649 | 0.0379 | |
| C | 최초설정일~2010.05.02 | 0.15 | 1.40 | 0.0045 | 0.005 | 0.0039 | 1.5634 | 1.5634 | 0.0385 |
| | 2010.05.03~2011.05.02 | 0.15 | 1.30 | 0.0045 | 0.005 | 0.0054 | 1.4649 | 1.4649 | 0.0385 |
| | 2011.05.03~2012.05.02 | 0.15 | 1.20 | 0.0045 | 0.005 | 0.0054 | 1.3649 | 1.3649 | 0.0385 |
| | 2012.05.03~2013.05.02 | 0.15 | 1.10 | 0.0045 | 0.005 | 0.0054 | 1.2649 | 1.2649 | 0.0385 |
| | 2013.05.03~신탁계약해 지 | 0.15 | 1.00 | 0.0045 | 0.005 | 0.0054 | 1.1649 | 1.1649 | 0.0385 |
| E | 0.15 | 0.14 | 0.0045 | 0.005 | 0.0054 | 0.3049 | 0.3049 | 0.0382 | |
| CH | 0.15 | 1.00 | 0.0045 | 0.005 | 0.0053 | 1.1648 | 1.1648 | 0.0376 | |
| C3 | 0.15 | 0.20 | 0.0045 | 0.005 | - | 0.3595 | 0.3595 | - | |
| CW | 0.15 | 0.00 | 0.0045 | 0.005 | 0.0053 | 0.1648 | 0.1648 | 0.0380 | |
| A2 | 0.15 | 0.00 | 0.0045 | 0.005 | 0.0054 | 0.1649 | 0.1649 | 0.0383 | |
| CP | 0.15 | 0.60 | 0.0045 | 0.005 | - | 0.7595 | 0.7595 | - | |
| C-P2 | 0.15 | 0.50 | 0.0045 | 0.005 | 0.00 | 0.6595 | 0.6595 | 0.0583 | |
| 지급시기 | 매3개월 후급 | | | | 사유 발생시 | 매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3.14 ~ 2013.03.13]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3.14 ~ 2013.03.13]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구분 | 투자기간 (단위 : 천원) | | | |
|------------|----------------|-----|-----|-------|
|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Class A | 178 | 341 | 519 | 1,033 |
| Class B | 20 | 56 | 96 | 214 |
| Class C | 119 | 372 | 644 | 1,421 |
| Class e | 81 | 147 | 220 | 434 |
| Class CH | 119 | 372 | 644 | 1,421 |
| ClassC3 | 37 | 116 | 202 | 456 |
| Class CW | 17 | 53 | 93 | 211 |
| Class A2 | 20 | 56 | 96 | 214 |
| Class CP | 78 | 244 | 424 | 945 |
| Class C-P2 | 68 | 212 | 369 | 824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가.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나. Class C-P2(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 수령요건 |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 | |
|-----------------------|--|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
| 분리과세한도 |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제외) |
| 연금외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 해지가산세 | 없음 |
|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계좌 승계 |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 연금저축 기타소득세 (특별 중도해지를 포함한 연금외수령) 비율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이하 "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공시장소 |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판매회사 영업점,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 구분 | 오후3시(15시) 이전 | 오후3시(15시) 경과 후 |
|----|---|---|
| 매입 |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
| 환매 |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p> |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p> |

4. 전환 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Ⅲ. 요약 재무정보

1.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7기 (2012.03.14 - 2013.03.13)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제6기 (2011.03.14 - 2012.03.13)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제5기 (2010.03.14 - 2011.03.13)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

| 통합 대차대조표 | | | |
|------------|-----------------------------|-----------------------------|-----------------------------|
| 항 목 | 제 7기 | 제 6기 | 제 5기 |
| | (2013.03.13) | (2012.03.13) | (2011.03.13) |
| 운동자산 | 2,678,403,632,882 | 2,193,989,106,539 | 1,699,010,774,333 |
| 증권 | 2,418,710,303,675 | 2,008,376,369,715 | 1,231,967,321,677 |
| 파생상품 | 0 | 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259,693,329,207 | 185,612,736,824 | 467,043,452,656 |
| 기타 운동자산 | 0 | 0 | 0 |
| 기타자산 | 39,784,886,332 | 109,432,252,463 | 25,416,464,859 |
| 자산총계 | 2,718,188,519,214 | 2,303,421,359,002 | 1,724,427,239,192 |
| 운동부채 | 0 | 0 | 0 |
| 기타부채 | 55,804,251,354 | 84,935,482,977 | 32,231,195,604 |
| 부채총계 | 55,804,251,354 | 84,935,482,977 | 32,231,195,604 |
| 원본 | 2,653,581,684,279 | 2,103,779,107,022 | 1,401,508,739,029 |
| 수익조정금 | -35,171,787,351 | -41,587,167,178 | -35,395,372,536 |
| 이익잉여금 | 43,974,370,932 | 156,293,936,181 | 326,082,677,095 |
| 자본총계 | 2,662,384,267,860 | 2,218,485,876,025 | 1,692,196,043,588 |
| 통합 손익계산서 | | | |
| 항 목 | 제 7기 | 제 6기 | 제 5기 |
| | (2012.03.14 - 2013.03.13) | (2011.03.14 - 2012.03.13) | (2010.03.14 - 2011.03.13) |
| 운동수익 | 49,905,379,004 | 161,494,715,534 | 331,023,160,385 |
| 이자수익 | 7,809,915,020 | 14,298,858,669 | 8,166,070,323 |
| 배당수익 | 31,313,106,496 | 25,375,345,794 | 18,773,924,000 |
| 매매/평가차익(손) | 10,782,357,488 | 121,820,511,071 | 304,083,166,062 |
| 기타수익 | 22,285,223 | 18,346,307 | 22,458,332 |
| 운동비용 | 5,676,139,069 | 5,010,897,074 | 4,838,754,870 |
| 관련회사 보수 | 5,274,600,529 | 4,403,507,484 | 4,306,541,760 |
| 매매수수료 | 401,538,540 | 607,389,590 | 532,213,110 |
| 기타비용 | 277,154,231 | 208,228,589 | 123,922,518 |
| 당기순이익 | 43,974,370,927 | 156,293,936,178 | 326,082,941,329 |
| 매매회전율 | 28.37 | 116.55 | 200.55 |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고객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 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 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판매회사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 명칭 :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고객 확인 사항 | 고객기재사항 |
|---|-------------|
| 1. 간이투자설명서 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듣고 받았음) |
|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 (적합함) |
|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 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 (제공받고 들었음) |
|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 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 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 (들었고 권유받았음) |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